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261

발의연월일: 2024. 8. 27.

발 의 자:김선교·김예지·김성원

구자근 · 김소희 · 서일준

최수진 • 이헌승 • 윤상현

박충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 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법령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위법령에서 의무 교육훈련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 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 등과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교육훈련 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 임(안 제75조).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75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절차"를 "시기, 절차"로 한다.

-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임용 또 는 임명된 자
-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임원을 말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생 략)	제75조(교육훈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u>해당하는 자</u>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			
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			
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u><신 설></u>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u><신 설></u>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		
	인의 임원이나 경매사로 신규		
	임용 또는 임명된 자		
<u><신 설></u>	3.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법인인 경우		
	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	4		
육훈련의 내용, <u>절차</u> 및 그 밖	시기 <u>, 절차</u>		
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			
한다.			